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 규정 등〉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30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4. 11. 13.
3.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직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지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통일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없다’(38.9%)거나 ‘관심없다’(28.3%)라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

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신설></u>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13.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립·변경할-----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④ (생략) <u><신설></u>	<u>하지 아니하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

- 현행법 제6조는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행법 제정(1999년¹⁾) 이래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2019년부터는 3년 단위로 수립주기가 변경되었고, 2023년부터는 다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환원되었으며, 시행계획은 2019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22년까지는 매년 수립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기본계획에 통합되어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제5752호, 1999. 2. 5. 제정, 1999. 8. 6. 시행)

-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통일교육의 체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내실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환류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개정안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부 등 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의 충실도를 높이면서, 단순한 착오나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복수의 입법례²⁾가

2) 관련입법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는 직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³⁾을 참고하여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68

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관련입법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한다.